

제429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4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상정된 안건

- | | |
|---|---|
|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 2 |
|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 | 3 |
|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 3 |
|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 3 |
|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 3 |

(15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임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특별법 5건의 내용 중에 지난번 소위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산림청의 김인호 청장, 행정안전부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기획재정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 보건복지부 임호근 정책기획관,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정책기획관,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 등이 출석하셨고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실장님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의 김호진 기획실장님 말고 부지사님 오셨지요?

○경상북도행정부지사 김학홍 예.

○소위원장 임미애 오셨는데 다음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올라오셨는데 잠시 먼저 회의 시작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행정부지사 김학홍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입니다.

먼저 이런 발언 기회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임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국회 산불특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조 1800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 편성 또 여러 정책 사업들로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해 주고 계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무너진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에 산간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바닷가를 휩쓸면서 지역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향후 몇 년간의 생계와 또 기업의 존속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특별법이 단순히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생업을 위한 복귀와 경영 재기에 희망이 된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피해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미리 계획된 회의로 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애로사항 또 관심 갖고 있는 사항 면밀히 또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0)

(15시09분)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가 3건이 있습니다. 소위심사 참고자료 그다음에 조문별 정부의견 그리고 소위 심사자료가 있는데 먼저 산불피해지원대책법안 소위심사 참고자료 이것을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넘기시면 목차가 있는데 지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를 완료한 것도 있고 논의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23페이지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의가 필요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협의된 사항들이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개 지방자치단체인데요. 경북·경남·울산인데 주로 피해지역이 크고 했던 데가 경북입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주로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다 논의가 됐고요.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 정부 수정안에 보시면 전에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에 대해서 79개 세부 품목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임산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쪽에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이건 의원님들이 내셨던 안에서 다양한 강원특별법을 참고를 해 가지고 안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제목만 제가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49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50조(산림투자선도지구 심의회)도 강원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9페이지, 51조(선도지구개발계획)도 강원특별법에 있는 산림이용진흥사업 등의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참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30페이지, 52조(선도지구 지정의 효과)도 강원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31페이지, 53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도 강원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33페이지, 54조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이 또한 강원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34페이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이 내용도 강원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한 겁니다.

35페이지, 56조(준공검사)도 강원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38페이지, 5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또한 강원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이 내용을 참고로 한 겁니다.

58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이 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한 겁니다.

61조(투자기업 지원)는 선도지구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근거 규정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9페이지, 62조(선도지구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또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의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63조(선도지구 내 기업 지원 특례)는 전북특별법에 따라서 참고해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64조입니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논의하실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66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이건 강원특별법의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43페이지, 67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또한 강원특별법의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44페이지, 68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이것도 강원특별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72조(특례의 존속기한 등)도 강원특별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지자체와 정부의 이견이 있는 내용들은 우선 41페이지의 농지법 적용의 특례, 다음은 45페이지 68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46페이지 69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47페이지 70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48페이지 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지금 쭉 전문위원의 보고와 관련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조와 관련돼서부터인데요, 이거는 산림청이 먼저 입장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3차 법안소위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이 산림투자선도지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자체와 협의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조로 이루어진 대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대안은 기존의 강원특별법 그리고 전북특별법의 내용을 주로 참조했고요.

다만 이러한 선도지구가 과도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가 과도한 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부부처가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9조의 제2항에 사업계획 수립 시 산림청장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받도록 해서 나름대로의 개발 과정에 별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스크린과 검토가 있을 수 있게 했고요.

또 50조의 제4항, 선도지구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산림청 고위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해지역의 산림을 잘 보존하면서도 산지 일부를 활용해서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와 잘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 외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가해서 동의하는, 정부 측에서 동의하는 내용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볼까요?

49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2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조의 4항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선도지구심의회에 함께 참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다른 의견이 있는 것들, 의견이 있는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서천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자체하고 정부안이 동일하니까 수용한 경우에는 일단 그러시고요. 이게 몇 개, 41페이지 65조부터 정부 측과 자체 의견이 의견이 있는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려겠습니다.

일단 41쪽에 의견,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의견이 조정이 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조(선도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농림부 나오셨……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 농림부 소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 농식품부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관련돼서 농지법 특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든지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법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면 될 사안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혁신도시 그리고 특별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농지법 특례를 별표 3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림투자선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불특별법과 관련돼서 그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지자체에 그냥 다 넘겨서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기로는 조금 불편도 있고 또 혹시 절차상에 시간이, 시간은 어떤가요? 혹시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본인들이…… 우리 특례를 준다면 지금 산불 난 데를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여기는 산림투자선도지구라 정한다, 1만 평 이상을, 그렇게 정하면 그게 이제 특구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안에서, 농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법을 바꾸지 않고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 법에 바로 적어서 넣는 것보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 특례가 원래 있으니 거기에 한 줄을, 산림투자선도지구도 들어가면 그 과정이 지난하게 오래되거나 절차가 까다롭거나 또 굉장히 허가 내주는 데 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절차적으로는 크게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저희가 산불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 지자체에 농지전용이라든지 진홍지역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이 진홍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6만ha 정도 지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농지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 151만ha 정도 되는데 그중에 6만ha를 진홍지역 해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전체를 다 하기는 않겠지만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투자선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가 어느 정도 조닝(zoning)을 해 준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바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시행령 개정을 해서 반드시 넣어 준다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서천호 위원님 먼저.

○**서천호 위원** 이게 지금 65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행령에 이 내용을 담을 거냐, 특별법에 담을 거냐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의 권한을 지자체, 소위 자치단체장한테 권한 위임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특별법으로 만약에 이걸 다 규율하게 된다면 우리 산불특별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있는데 그 개별법에서 다 농지법 특례를 갖다가 적게 되면 저희가 농지법상에서 이걸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에 그 관련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농지보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농림부에서 설명하는 그 설명 내용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은 산불에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 이 선도지구 내 농지법 적용 특례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1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권리가 있고 2항에 보면 농지전용허가권을 시도지사에 이관하는 부분이 있고 3항에 보면 이것도 너무 자의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3항에 제한을 걸어 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산불에 한해서 최소한의 법 적용을 이 법에서 명시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의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듣자면 아니, 많은 다른 특례, 다른 개별법에도 그럼 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행령으로 하면 다른 법 개정 없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다른 개별법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까지 상정을 해서 이 법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법안 시행령을 고치게 되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6~7개월 걸려요. 사실조사부터 시작해서 단계가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특별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복구를 하자, 복구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특별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피해주민들도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으로 이 특례 내용을 넣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법 조문 내용을 보면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정책관님 맞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김형동 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면 더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흔히 말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돼서 보다 직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의 수준을 봤을 때는 시행령에 담기 어렵다, 저는 법률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담으면 안 된다라는 형식 논리였고 논리 자체도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법에다가 브레이크를 좀 더 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선도지구가 어느 정도로 지정이 될지는 모르는데 6만 정도가 지정될 거라고, 농지가 들어갈 거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아닙니다. 진홍지역 전체가 6만ha라고 합니다.

○김형동 위원 다시 말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피해지역에 있는 진홍지역의 규모가……

○김형동 위원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김형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마 전체 다를 뚫어야 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6만ha, 서울 면적인데 그건 좀 과하게, 우리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거지요.

복구의 개념이 애초에 재건까지 포함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농지 그대로, 나락 심었는데 보리 심었는데 그대로 보리 심고 나락 심을 것 같으면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보다 좀 나은 생활로, 산불이 났지만 보다 나은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효능감,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보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게 지자체 단체장입니다. 그것도 기초단체에 주면 혹시 그런 우려점이 있겠지만 광역단체, 경북지사, 경남지사, 울산시장한테 줬을 때 그렇게 협숙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이 더꼼꼼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체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염려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한두 개 좀 제도를 강화한다고 그럴까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령에서 다 해 주겠다…… 특별법은 특별히 하는 거기 때문에 령으로 갈 것 같았으면 특별법 논의 안 합니다,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시행령에 담는다면 농림부 입장에서는 시행령에 이걸 개정해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시행령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별표만 고치면 되는 부분이라서, 글쎄요 정확하게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반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나 늦어지면…… 원래 시행령 개정할 때는 의견 수렴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공시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데 별표를 고치는 데에는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거는 저희가 법제처랑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 회의 끝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소위원장 임미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투자선도사업은 전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이렇게 농지전용과 관련돼서 조금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저는 농지법이란 일반법의 시행령에 이것을 담아 두는 것이 이후에 또 다른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도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법, 이거는 사실 지원과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법의 효능은 사실상 또 찾아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농지법 일반을 손보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지역에서 의원 활동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부도 농지법을, 그러니까 헌법에 바탕을 둔 농지법, 다시 말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누구나, 기초단체나 지역에, 특히 논밭으로 다 돼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겠어요, 그동안에, 좀 권한을 내려 달라고. 농지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만 손보면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제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좀, 말씀이 김니다만 촌에 귀농한 분이 ‘나는 화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논밭에다가 미술관 하나 짓고 싶다’ 이런 소원 수리가, 아니면 다른 것을 좀 쓰고 싶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절대농지는 절대 안 바꿔 주지요, 오히려 태양광 사업을 허락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차제에 이 부분 특별법에 담아야 됩니다. 담아서……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 농지법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막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김형동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소위원장 임미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상북도에서 오셨으니까 경상북도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고 이걸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저희 피해지역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특별법 체계든 농지법 시행령 체계든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즉각적인 그런 조치나 실행의 시기적인 그런 분위기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행의 효과가 동일하다면, 예를 들어서 농지법 시행령에 그러한 절차적인 것이 일정한 시간 내에 특별법 시행의 시기와 부합해서 늦지 않게 시행된다는 전제가 되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더 정책적으로 확대될,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정책적 확장성까지 감안한다는 전제라면 저희들은 신속한 효과 발휘를 위한 취지에도 동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이 피해지역의 취지 입장에서는 서천호 위원

님이나 김형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건 이렇게 위원장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해수위에 있다 보니 농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는 이후의 과제이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시행령의 별표를 개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별표에 있는 여러 특구들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청 농지 전용한 사례들이, 사례를 하나 해서…… 어느 정도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네요, 농림부장관하고. 그렇지요?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농지가 전용돼서 다르게 쓰였는지 그 기간을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 예시를 한번 들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시행령은 얼마 걸리는지, 시행령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새로 생긴 거니까 별표에 하나 더 넣는 건데 넣는 데는 얼마 걸리는가 위원장님의 사례를 요청하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시도지사랑 농림부장관하고 해서 어떤 경우에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 시간이 만약에 짧다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급한 거는 우리가 이 산불 난 지역을 빨리 재건·복구하는 게 급하니까요.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에 이건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입니다. 지자체에서 올라온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입니다.

68조, 69조, 70조, 71조가 환경영향평가하면서 다 같이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소위원장 임미애 같이 의견 주시면 됩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두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질 걸 기대하는 그런 의도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전라북도하고 강원도에 권한 이양을 했는데 권한 이양과 속도 개념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 검토기관, 연구원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하는 부분들 준비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지방 조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 면에서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견 제시했던 거고요.

최근에 속도를 좀 빨리하는 개정법안들이 아시겠지만 전력망 구축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해상풍력에 관한 특별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는 절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법을 참고해서 이 특별법에 조항을 넣는 게 실질적인 단축 효과가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특별법에 그렇게 넣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넣는다면 어느 법에 넣어야 된다는 건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아니요, 이 법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망 구축에 관한 특별법이나 해상풍력에 관한 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참조하시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이 조항과 관련해서 경북 측 의견 한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것 부처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부처하고의 협의 시에는 어떻게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형식적 권한을 지자체에 넘겼을 때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러한 방향과 의지를 전제로 한 저희들의 절박한 시급성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의견에서 전력망구축법이나 다른 조항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 원래의 취지대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의, 대체 조항의 대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든 가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기존의 환경부 의견처럼 만약에 현행법의 개선된 절차대로 신속하게 절차를 시행한다는 전제와 조건이 확인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절박성과 시급성이 더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력망이나 해상풍력과 관련된 법안에 이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 조문을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담아도 상관이 없는 거라면 법안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화재가 나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빨리 복원해 내고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해 내자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은 저는 회복을 빙자한 개발 행위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규제 조건, 환경영향평가나 기후변화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그래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북 지역의 지금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림은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법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저희 본회의 끝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의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요.

다음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님들 자료의 3번 50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지역주도형 산림복원과 관련되는 건데 이 안이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그리고 또 ‘지역주도형 산림복원 및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수정안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산림 회복과 활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이,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지자체가 모두 정부 측 의견에 다 동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정부 측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산림청에……

○**산림청장 김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만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8조와 59조가 유사·중복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두 조문을 통합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경북도에서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조항의 세부 의견들이 있는데요. 특히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자구를 수정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재난방지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다든지 ‘스마트농업’과 같이 ‘스마트임업’으로 수정해서 정책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한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3페이지의 제59조제1항과 제58조제1항이 중복되어서 삭제한 부분도 있고 또 4페이지의 제59조제2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산림 복원·복구 및 활용계획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수립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의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복구사업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복구사업 축소가 우려되므로 이 부분은 삭제 의견을 드렸고요.

또한 재난안전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를 받은 경우는 반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5페이지의 59조 제5항은 자구를 좀 매끄럽게 수정하였고, 제6항은 산림청장의 승인 절차 삭제 의견은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조항도 삭제하는 의견을 저희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달희 위원** 정부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없으면 이건 자구 수정이고 용어의 정합성을 위해서 수정된 거여서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충연 5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과 관련돼서 정부 쪽에서는 이번에 금번 산불 피해를 고려하여 채취임산물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51조 2항에 대해서 추가로 넣은 결로 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피해임업인의 경영 복귀 및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용자 우선지원을 위한 근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작성했고요. 산림청 입장에서 송이 피해 지원이 확대된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특별법 반영을 통해서 채취임산물 피해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일단 기재부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산림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상이 송이도 그렇고 1차 보상, 생계지원비가 좀 나간 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이 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추가될 개연성이 있지요? 기재부국장님께 제가 말씀……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예상치 못한 질문을 주셔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달희 위원 그러면 생각을……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아닙니다.

○이달희 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기본적으로 생계비 쪽은 일단 행안부 재해대책비에서 나가고요.

○이달희 위원 예, 나갔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재해대책비를 내년 예산안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많이 늘려 놓은 상태고요. 만약 모자란다면 어차피 목적예비비로도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만 해서 따로 돈을 얹히거나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참에, 마이크가 연결된 김에 이 법이 완성돼서 조만간 통과가 되면, 지역민들은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좀 챙겨 줄 부분이 있는지 지자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과 지자체 의견이 서로 협의가 끝난 관계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입니다.

57쪽입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57페이지 다섯 번째, 피해지역 산림관리 권한의 위임입니다.

이 건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고요.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 내용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는 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정부 측 의견 있으신가요?

○산림청장 김인호 별도의 의견은 없는데요.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안 내용 중에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 부분에서 보전산지 변경·해제 권한은 산림투자선도지구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한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 쟁점사항과 관련해서는 전체 논의가 끝났고요. 이제 가장 큰 쟁점사항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전문위원 황충연 한 번 더……

○소위원장 임미애 하나 더 있나요?

○전문위원 황충연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산불피해지원대책법안 조문별 정부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금방까지 논의하셨던 것은 지난번 3차 회의 때까지 논의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리사항이었고요. 오늘 새로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셔야 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22쪽지가 되겠고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고 11번부터는 오늘 추가로 논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과 관련돼서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는 강행규정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정부 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처에서도 지금 법안 개정들도 하고 있고 해서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가 하나만……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그런데 오늘 약간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정부하고 지자체가 사전에 조

율을 했다 하는데 맞아요?

○**소위원장 임미애** 이거는 경북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경북 부지사 가셨어요? 실장님 계시네.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김형동 위원** 약간 느낌이, 불려 가 가지고 야단 맞았습니까?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김형동 위원** 확실합니까?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자체와 부처 간 협의 조정을 당부를 하셔서 그 이후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졌고 부처에서도 저희 지자체 입장을 상당 부분 많이 수렴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김형동 위원** 저희야 짐을 좀 덜었다라고 생각도…… 실제 가장 중요한 일을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해야 할 지자체가 의견을 동의를 해 줬는데 저희가 그에 대해 의견을 더하고 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약간 이런 수고를 해 줬습니다마는 뭔가 좀 강하게 주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2개 건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끝까지 요구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달희 위원** 잠깐만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재해 피해에 대해서 일반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게 통과되면 이게 보상되니까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저희가 지금……

○**이달희 위원** 이번에 새로 항목이 들어가서……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난번에 5월 달에 개정해 주셔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시설 복구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이달희 위원** 시행령 만들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언제쯤 발효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저희가 기본법 개정안 시행 시점이 11월 28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이 같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시행이 되면 소급 적용이 돼서 이번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 통과돼도 이 산불 피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설 피해는 다 보상이 되는 거지요, 그 행안위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그 지원 항목하고 지원 기준 단가에 맞춰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중기부에서 김우중 기획관님 나와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예.

○김형동 위원 이게 다시 한번 이달희 위원님께서 또 짚어 주셨는데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기존의 법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기존의 법을 뛰어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기벤처 관련돼서 제가 여러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남후농공단지에 직접 지원되는 건 없잖아요.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현재는 지금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정도 진행하고 경영안정자금이나 어떤 다른 다양한 융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일종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이 농공단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법에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것 아닌가……

아까 뭐 해당 법률 안에서 또 추가하겠다고 하지만 이른바 직접 지원은 사실상 되기 어렵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 담아 달라는 게 이분들의 얘기거든요.

올봄에 민주당 위원님들도 열다섯 분이 다녀가셨고 우리 당도 갔었고 남후농공단지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얘기는 융자 있는 것 누가 모르냐, 정책자금이 있는 것 그거 누가 모르냐라는 호소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앞서 행안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이 5월 달에 통과돼서 11월 달에 시행령까지 본격 시행이 되게 되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위원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담보가 돼야 되고 안 되면…… 10월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11월 28일 시행입니다.

○김형동 위원 1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예.

○김형동 위원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서 추석 전에 제가 내려가게 되면 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게 없느냐고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답해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예.

○김형동 위원 확실합니까? 왜 여기 여쭤봤는데 기재부 담당자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이 법이 정말 제대로 자기들한테 효능감 있게 만들어 지느냐를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자 한 자 다 봐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분명히 내가 뭐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담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법이 재난안전 기본법에서 반영이 안 되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반영시켜야 됩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예, 행안부랑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동 위원 협의를 왜 또 합니까?

○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지금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김형동 위원 기재부에서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충연 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혹시 경북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입니다, 그러면.

○ 전문위원 황충연 9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 분야 특별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내신 안에는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여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삭제 의견을 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임미애 이 건과 관련해서 경북 측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식품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지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산불 피해와 관련돼서 원래 규정에 들어가 있는 대파대 지원이라든지 보조율 이런 것들을 대폭 상향을 해서 대파대 같은 경우는 보조율 100% 그리고 실거래가의 100%로 전향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논의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임미애 경북에서 아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것 같았는데……

○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기본적인 정부 협의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긴밀히 했기 때문에 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아까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역 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과 지금 현재 논의되는 이 안건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것의 시한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를 전제로 했을 때의 적정한 정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달희 위원** 농림부는 아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행안부법이 그렇게 준비 중이니까 ‘할 수 있다’인데 물론 대폭 상향이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 지금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지 100% 보상받았다고는 그렇게 생각……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전향적으로 시행했고 기 지원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 지원 다 됐는데 ‘하여야 한다’로 시원하게 적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주민들이 돈 다 따져 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그래 미리 얼마 받았잖아, 대파비 받았잖아, 농기계 수리 11개에서 35종으로 올려 줬잖아, 고맙지, 이것도 다 했잖아. 그런데 굳이 ‘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없이 ‘하여야 한다’고 해 주시지요,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전액’이라는 용어만 삭제를 한다면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전액’ 빼고 ‘하여야 한다’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의원님 안의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29조 1항을 ‘전액’ 자를 빼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에서도 동의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산림청장 김인호**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그러면 13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금융지원으로 변경을 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동의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 있으신가요?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14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아이돌봄 지원 및 장애인 긴급 돌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거는 수정된 내용이 제 법안의 것 3항 빼는 거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17페이지 여섯 번째,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정부 측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쪽입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19페이지 7번, 심리상담·문화예술활동·치료·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강행규정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심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소방관께서도 지원 나갔다가 그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나아가려 하면 강제규정으로 해서 ‘해야 한다’로 하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할 수 있다’보다는 심리적 안정이라도, 이 법에서라도 좀…… 이렇게 해 놓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할 수 있다’는 너무 미친한 것 같습니다. ‘해야 한다’로……

○**소위원장 임미애**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님, 지금 이달희 위원님의 의견에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공감하는데 의견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특별법에서 저희 정부 지원 나가는 부분이 정부 쪽에서는 재량규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체 피해 범위의 특수성이라든지 최근에 지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심리 지원 같은 경우에 또 심각성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만약에 방향을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해야 한다’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장님,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는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의료지원,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이것 박형수 의원님 안이군요.

○**이달희 위원** 제공해야 한다지요. 우리가 건강보험이 전국민 보험인데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지요. 어떤가요? 복지부 사업.....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이 소방관이나 경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나 건강복지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도 재량규정으로 재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와 있을 때 이런 형평성을 따져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재량규정으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체계 내에서도 다른 지원 조항들이 의무 조항으로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가면 어떻겠나 의견을 드렸었고요.

실제로도 지금은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지원 체계가 피해자 등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쪽 직역에 대한 심리지원은 별도로 행안부나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합할 수 있는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해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체계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규정 체계에 대해서는 타 법이나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달희 위원** 타 법 어느 법에, 여객기나 이태원참사나 세월호나 어느 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잠깐만, 법 예는.....

○**이달희 위원** 대규모 피해자가 났고 피해가 난 재난 관련한 특별법에, 어느 법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다른 법에는 트라우마센터까지 그 주변에 다 지어 주고 '해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입법례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다른 위원님들.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19페이지, 20페이지 정부 수정안 내용은 동일선상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판단이 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심리상담 지원 부분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도 지금 현재 별도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제한 요

건이지요, 일종의 필요하다라는 판단은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제공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요건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바꿔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료지원 부분도 정부 수정안을 보면 박형수 의원안의 각 호를 다 없앴어요. 삭제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각 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성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는데 각 호를 없애고 다만 여기 이 본문에 ‘주민에 대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심리상담 지원과 의료지원 부분이 조문 간의 균형도 맞을 뿐더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충분치는 않겠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정부 측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 부분도 지금 현재의 조항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은 다른 특별법에 어떻게 담겼는지 조문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방금 확인한 건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는 앞을 좀 생략하면, ‘앞 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등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4·16세월호 참사 특별법에는 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인데 1항, 2항이 있고 3항이 ‘국가 등은 이러한 지원을 재난법 몇 조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것을 그렇게 읽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프린트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이것은 받는 대로 다시 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예.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코멘트를……

방금 보건복지부 임호근 기획관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가 이 특위 시작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게 어떤 거였나? 이제 여름이 끝나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집을 잊고……

임시주택 가 보셨지요, 3평짜리?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거기 3평짜리 현장에는 못 가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번에 한번 가 보세요.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제 추석을 나게 되고 설을 지내야 되는데 제가 염려했던 게 그 피해 입은 분들이 임시주택에서 제2차 피해, 제일 극단적인 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 봤습니까? 그것 산불 때문인지 지병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딱 한 예만 듭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병상을,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뜨거운데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케어하고 한 분은 누워 계시고. 이것 국가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경북 북부 지역만큼, 전남하고 포함해 가지고 의료와 보건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변변한 의대 하나 없습니다. 완전 사각지대예요. 어디 가서 그쪽이 자율적으로 의료체계가 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정부가 크게 개입할 이유도 없어요, 정부 서비스보다 민간이 훨씬 뛰어난데. 그런데 여기 산불 난 지역은 엊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의료 소외 사각지대예요. 어떻게 구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예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은 더 강화돼야 되지요.

한번 꼭 현장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문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례나 이걸 조금 더 찾아보고 아까 서천호 위원님 말씀 주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

○김형동 위원 더 가벼운 것 말씀을 드릴게요. 80 평생, 90 평생 살았던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우리 서울 와 가지고 이삼 년마다 돌아다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돼서 한번 봐 봐야지요. 그게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건물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가지고 못 하는데, 나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디 집 탄 것 이런 것보다 더한 게 마음이 타고 두 번째는 진짜 염려스러운 게, 가장 극단적인 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 임시주택에서 돌아가십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이 현장에서 여러 피해 주민들의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 그 절절한 마음을 잘 전달해 주셨고요.

지금 의료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타 법에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한 후에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25페이지, 8번 공동체 회복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대해서 국가 등은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정부는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지구 조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안이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정부는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행안부의 마을단위 복구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이걸 삭제하자라는 의견이고 지자체에서는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지부에서 의견을 좀 주셔야겠네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둔 내용과……

의견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이것은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소위원장 임미애** 행안부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첫 번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재량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드린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실제 구동을 하려면 각 지자체의 추진 의지라든지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시설 관련해서는 당초 의견을 드린 대로 지난번 복구계획에서 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해서 이미 저희 사업이나 국토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계속 연차별로 예산 지원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된다고 그래 가지고 삭제 의견을 드린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국장님, 이 법을 그냥 조문을 살려 놓고 국토부 마을재생사업이나 행안부의 예쁜마을사업이나 뭐 이런 것…… 이 법을 살려 놓고 그냥 그 사업을, 다른 데 가는 것 우선 여기 당겨서 하시면 안 됩니까? 이 법조문이 있으면 공모해서 그냥 확 뿌리던 것을 여기에 집중해서 우선 빨리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기준에 하고 있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중복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현재 또 관련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 규정을 이렇게 남겨 놓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근거 규정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 해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계속 바꿔잖아요, 국장님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이게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 규정이 있으면 ‘아, 이 규정이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빨리 들고 가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기재부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 봐야겠다’ 이런 사고의 근거 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 그렇지 않으면, 법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넣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서 계속 유지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해당 마을 복원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 남겨 놓는 것도 저희 정부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지금 정부 의견에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시행, 여기 ‘시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둔 부분 있잖아요. 앞에 내용에서 저희가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한다라고 하시고 뒤에 이것도 받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방금 받는다고 답변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소위원장 임미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한다라고,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이달희 위원 어차피 100% 주실 것 아니고 5 대 5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가서 달라고 할 거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그리고 밑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또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건 그냥 받는 걸로 하고요. 32쪽 넘어가겠습니다. 맞나요?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장님, 27페이지 아까 행안부에서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보면 김태선 의원님 안하고 이만희 의원님 안, 2개 안이 있는데 이건 전문위원실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정부하고 협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다음입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그러면 32페이지,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제조혁신 지원, 이것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것과 서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데 문제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지금 기초 단계가 없어요, 정부 예산에 내년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지금 안 들어 있거든요, 정부안에요. 그러면 새로 공장을 할 때 바로 이 단계를 중급 그다음에 고급, 높은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이 단계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달희 위원 시행령으로 연구해 갖고 답으라고.

○허성무 위원 시행령에?

○이달희 위원 단계별은 어떠세요?

○허성무 위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그렇게 하지요.

○이달희 위원 시행령에 해 가지고.

○허성무 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계의 스마트공장을 할 건지가 다양한데 현재 주어져 있는 정부 예산에는 내년까지 기초 단계 지원은 없어요. 위의 고도화 지원 단계만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으로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우선 지원한다는 거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예산 관련해서는 혹시……

○허성무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중기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초 예산은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는 담겨 있지만 않은데요. 저희가 기초 단계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정책적으로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금번 1차 추경 때 이미 스마트공장이 산불 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 기초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 특별법 내용에서 기초를 할 거냐 고도화를 할 거냐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좀 추가……

○**허성무 위원** 단계에 관계없이 다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기초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성무 위원** 중기부에서 나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영이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 해서 나온 데는 없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현재 기초 단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계속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국가는 역할을 안 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저희 기초 부분은, 여기서 스마트공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데요.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좀 더 고도로 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게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데……

○**허성무 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 여기 규정은 좋지 않습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우선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이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기초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니 새 공장을 지어서 기초부터 나아가려고 할 때, 새 공장을 지어서 하는데 처음부터 고도화 단계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도화 지원을 하실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오히려 새롭게 공장을 건립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고도화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단계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예, 상황에 따라서……

○**허성무 위원** 예.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달희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말씀 꺼내셨으니까. 그러면 시행령 할 때 ‘산불특별법에 관한 지역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업은 기초 단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한 줄을 시행령에서 넣어 놓고 다음에 내년에 추경이나 이럴 때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이나 해서 넣어 주면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위원님, 기초·중간·고도 이 부분은 대개 법률적인 규정을 통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를 넣느냐, 고도 단계를 넣느냐라는 걸 법률에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시행지침에, 부처 내의 지침에 그렇게 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예.

○허성무 위원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수준이 기초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이 법에 의하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만 하면 넘어가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어차피 국회의 예산심의 논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허성무 위원님도 또 산중위 위원님이시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산중위에서 논의를 하실 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부대의견 정도로 담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김우중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33페이지, 관광단지개발입니다.

이 건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살펴보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동의하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잠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위심사 참고자료 아까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의 별표로 담는 데 걸리는 기간을 얘기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이 보통 보니까 특별법의 경우는 2개월에서 이태원참사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2·29 여객기참사는 시행령 제정이, 특별법 제정된 뒤에 시행령이 만들어진 게 2개월 걸렸습니다. 세월호는 4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볼 때 이 정도 기간이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의 입장은 특별법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행령이 제정되는 기간 내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농림부에서 보충 의견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41쪽의 선도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와 관련해서 여기에 이걸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에 담을 것이냐라는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선도지구라는 게 경북에 한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사업하는 거지요? 아닌가요? 처음인가요?

○이달희 위원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게 일회성 사업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특별법에 있어서는 일회성 사업으로 볼 수 있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특별법에서는 일회성인데 산림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이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대규모 산불 난 데만, 특별법 조항에 들어가는 데만 시·도지사하고 울산 같으면 울산시장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1만m² 이상을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고유명사처럼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혹시 이후에도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사업이 산불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혹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지만요 산림재난의 상황이 위낙 염중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산사태라든지 또 산불이 가능하면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복구와 지원을 위한 산지형 특별 대책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시행령의 별표 개정을 통해서 농지법의 전용과 관련된 조항을 담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시행령을 제정하는 기간 내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서천호 위원 41페이지 65조와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조문별 정부의견 42페이지에 보면 57조가 있습니다. 57조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산림투자선도지구 내에서 보전산지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입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수용을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서천호 위원 그런데 보전산지 해제권한은 지금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는데 현재 보면 농지전용허가와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는 그냥 농림식품부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이게 같은 법안 내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방금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부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진흥지역 해제 심의, 농지전용 의견 제출, 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 전용 협의, 해제 승인, 이 과정을 거치면요 최소 6~7개월 갑니다. 전혀 쉬지 않고 거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3~4개월 만에 이걸 해결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6개월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단축을 하면 4개월 정도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전용 협의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전

용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진홍지역 해제와 관련돼서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농지법 시행령 별표3의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통상적으로는 그게 다 자체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6개월에서 한 1~2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행령 개정 시기와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법체계상 문제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해서 지금 시행령 별표를 정정하는 시기 그다음에 이 법안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별표로 수정하는 게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위원** 말씀을 좀 이어가서……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위원** 경북도가 아까 나오셔 가지고 정부안을 수용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말을 꺼내기가 좀 그런데 이게 아마 어떻게 카테고리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건수가 계속 늘어나겠지요. 쌓이겠지요. 그런데 빨리 되는 거야 담당관님 계실 때는 그렇게 해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법이 여기서 시행령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다른 두 케이스 된 거는 그 케이스에 대한 예이고 산불지역과 관련돼서 선도지역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 수십 건, 수백 건이 적용 대상 케이스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도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이관해 놓으면 훨씬 더 시도가 알아서 잘할 걸요, 그리고 일관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꾸 담당관님께서 담당관님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시행령이 꾸준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법보다 더 강력하게 집행·적용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인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형식적으로 여기 특별법의 조문에다가 자체에 이관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테고 농지법이라고 하는 일반법 속에서 갖가지 특별법에 관련되는 특례들을 규정하는 방식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지법 같은 경우는 이 특별법뿐만 아니라 십여 가지 되는 특별법과 관련된 특례들을 규율을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예외를 두게 되면 저희가 농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

일 이내, 이런 법도 사실 마땅치는 않은데 그러면 영에다가 아니면 하위규정에다가 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거나 특정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별표에는 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얘기는 어떤 것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잘 적용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농지법과 산지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농지법 일반법에 담아서 예외 규정들을 별표, 시행령에 담는 것이 이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시행령과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그 시간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그렇게 농림부의 의견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형동 간사님.

그다음에 45쪽입니다.

45쪽,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협의 그다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이게 전부 다 다른 전력망이나 해상풍력과 관련된 특별법에, 법에 이것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자료는 받았는데요?

환경부.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특례법의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하면서 다른 환경영향평가의 어떤 법적 기간,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폭 단축한 게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하다 보면 산림청이든 여러 가지 부처들의 의견들이 또 필요한데 그 부처들의 의견들이 무조건 45일 이내에 다 도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 놨고요.

그게 의견이 오지 않으면 이미 협의가 완료된 걸로 간주하는 조항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통상 두 번 정도 보완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법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간 전력망에 준해서 이 사업들도 그렇게 중요성을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 조항이 여기 자연경관영향협의와 관련해서도 적용이 되나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예, 지금 이 관련 것들이 환경영향평가 때 다 같이 일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법조문을 넣자라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인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예, 그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취지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거나 난개발이 되거나라는 것을, 이런 조항들이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저희가 내용을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45일 이내에 어떻게든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하는 의무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우선 처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해서 경북의 의견 한번 들어 볼까요?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당초 환경부가 개선된 절차로 시행한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다른 유사 법례에 따르는 별도의 조문화 부분은 본래의 기대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의 반영은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그러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처럼 우리 산불특별법에도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고쳐서 넣으면 결론은 법에 명시는 되고 결정은 시도지사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45일 안에 결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현장에서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 승인권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환경부고 그 환경부가 사업 승인기관인 산업부장관한테 45일 이내에 의견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달희 위원 산림투자선도지구를 개발해서 여기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산림청, 시도지사가 환경부를 끌어들여서 평가를 요청해서……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사업 승인기관한테 저희가 45일 이내에 의견을 줘야 됩니다.

○이달희 위원 산림청 생각은……

○산림청장 김인호 어느 정도의 산지 보존적 측면의 전략도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어떤 영향평가에 대한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달희 위원 그러면 투자를 다 받아 오고 했는데 이 기준이 기준에 산을 깎는 것처럼 똑같이 기준을 한다면…… 지금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다른 산하고 다르거든요. 불 타는 산, 폐허가 된 산을 투자를 유치해서 대한민국에 없는 돈이 되는 산으로 복구·재건을 해 보겠다는 취지가 이 법에 담겨 있거든요. 그 환경영향평가를 수목이 우거진 청명한 산하고 똑같이 비교해 가지고 이거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기준을 완화할 장치를 한 줄 적어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정부 수정안에 보면 제66조(선도지구 내 산지 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내용에 저희가 완화된 부분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절차라고 하는 것이 산지 내가 아닌 산지 외의 내용과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달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특별한 특례를 적용하지만 그래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너무 난개발 또는 과도한 개발이 아닌가라는 것은 49조에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50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산림청 고위공무원이 포함돼서 협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환경부의 절차는 존중되어야 될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 법안 내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달희 위원** 찬성하는 의견은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난개발에 산림을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개발 중심 가능성이다 이렇게 하고 또 찬성을 하고 싶은 건 지자체가 선도지구에서 그동안 없던, 지금 산림청의 목표도 임업이나 산림을, 정말 우리나라 돈이 되는 산을 만들고 싶은 거 맞지요?

○**산림청장 김인호**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게 조정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처럼 넣고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는 걸 찬성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문구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정부 부처하고 논의해서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건요 아까 뒤로 미룬 게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조문별 정부의견에, 20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뭐였나 하면요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서는 심리 상담 지원해야 한다라고 담는 것은 동의가 됐는데 의료지원과 관련돼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라는 이 임의규정과 의무규정 그다음에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다른 특별법에서는 어떻게 담겼는지를 살펴보자고 말씀드렸고 자료가 지금 배포가 됐지요?

○**전문위원 황충연**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아직 안 됐나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가 찾아본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심리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시행령을 잘못 인용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29여객기 참사 특별법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다음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보면 의료지원은 ‘지급할 수 있다’ 공히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돼 있고 심리상담 등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다 공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뒷부분의 공동체 지원에 관한 부분도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법체계 내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틀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심리지원·의료지원 바꾸는 데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아까 지나가면서 빨리 지나가서 조금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프린트 오기 전까지 위원장님, 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소위 심사 참고자료 23쪽의 논의사항 첫 번째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논의사항 임미애 위원장님이 너무 스마트하게 해서 제가 놓쳤습니다. 빨

리 지나갔습니다.

산림청장님,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유림은 대체로 어떻게 관리, 유실수를, 수실류를 심을 수가 있나요?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잣나무나 밤나무, 대추나무 이런 나무들은 열매를 얻어서 임산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유림에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서 가능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 한 줄을 더 넣어서, 산림경영특구 내, 뒤 페이지 24페이지에……

○산림청장 김인호 5항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5항을 만들어서 산림경영특구 내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항목을 하나 넣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김인호 지금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부안으로 5항을 신설해서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 대해서는 임산물 소득원인 지원대상 품목 중에 아까 말씀드린 잣, 밤, 대추류 등의 수실류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지금 경상북도 산이 그동안은 날씨 때문에 짓지 못하는 수실류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거기에 항목을 하나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추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굉장히 꿈꾸하시네요.

이제 저희 특별법 자료가 다 배부가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심리상담 지원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지원에 생활지원금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여기에는 의료지원금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이것도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맞춰서 하시지요, 그냥. 똑같이 맞춰서 하시면……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렇게 맞추어서 하는 걸로 정리할까요?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방금 배포된 건을 보면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법안 13조에 맨 끝에 보면 의료지원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심리상담도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의료지원도 ‘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도 정부 수정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 오른쪽에 보면 의료지원도 ‘피해주민에 대한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건복지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쪽에 있는 박형수 의원님안은 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를 쭉 나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호를 나열하지 말고 지금 여객기참사특별법 13조의 내용처럼 이렇게 해서 이것에 준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의료지원에 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된다 그

윗 조항의 취지와 같게 조문은 그 비슷한 취지로 저희가 조금 더 구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리고 13조의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까지를 넣고 박형수 의원안의 각 호는 삭제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임호근** 예,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제가 사실은 딱 2시간만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여서……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큰 논의거리가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이 법이 논의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관련된 개략적인 이야기는 이 안에서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정부 의견에 보면 11번부터 22번까지가 위원회 설치와 관련되는 겁니다. 위원회 설치 및 점검·평가, 손실보상금, 배상금,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의견제출,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지원의 원칙 및 피해유형의 분류,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재건 및 활성화 지원, 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정비,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특례,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입법자로서의 결정이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면 위원회에 어떤 기능이 부여돼야 되는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된 다음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 설치 여부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회 설치 여부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들어 볼까요? 행안부에서, 재난이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저희가 정부위원회 총괄하는 부처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미 다른 특별법에도 위원회가 다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입장은 기존에 있는 정부위원회 중에서 이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번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명칭이나 아니면 위원회 위원님들 구성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거나 다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다음에 그러한 거를 기준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보면서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각 부처별로 심의 의결 안건 중에는 부처에 해당돼 있는 부분이나 또 재정 당국의 의견 그리고 또 자체의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입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 들으셨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북보다는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임미애 위원장님이 하자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땐 얘기 할 게 뭐가 있어.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기존 정부위원회에서 지금 이 특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데에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긴 하네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경북만 또 울산·경남 합치면 9만 9000ha가……

지금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을 하면서 이 법의 취지의 사각지대나 아니면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산불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국민들이 일상으로 거의 진짜 100% 돌아갈 정도 까지 이 위원회는 존속될 예정이잖아요, 만약에 만든다면.

지금 경북은 의성에서부터 청송, 영양, 영덕, 안동 5개의 시군이 산불이 났는데 유형이다 다릅니다. 심지어 배가 타고 산꼭대기가 타고 마을이 타고 공단이 타고 다 유형이 다른데 어디 하나, 한 시장이 안동시장이 대책을 세워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산청 마찬 가지고 또 울산도 마찬 가지고. 흘어진 3개 시도의 8개 시군에서 일어난 일들을 케어해 가야 되는데,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원상 복구하는 데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빠른 대책, 행안부가 현장에 직접 와서 현장을 잘 빨리 수습하고 기재부도 특별예산을 세워서 빨리 모듈주택이라도, 그래도 엉덩이라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마련해 주셔서 그 부분도 고맙고 여러 가지다 잘했는데 지금부터는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이 법에 하나하나 담지 못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에만 맡겨 놓기로는 너무 범위도 크고 예산도 솔솔솔 솔찮게 들 내용인데요. 그래서 협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예산 갖고 먼저 여기에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상 회복될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안부 국장님이, 기존에 있던 위원회 어떤 게 벼락 떠오르세요? 벼락, 사투리인가? 어떤 게 스쳐 지나가시나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각종 대형재난 발생하고 특별법 제정될 때마다 위원회가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도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요. 이 위원회를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조사위원회에 넣겠습니까, 아니면 여객기 지원과 추모 사업하는 그 위원회에 넣겠습니까? 어디 위원회에 넣겠습니까? 위원회를 조정하신다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 생긴 재난이니까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관심 있게 제안하시기도 하셨지만 꼭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저도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두고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없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저는 이건 마치 앙꼬 없는 찐빵과 똑같지 않

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위원들의 의지가 그리하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특별법의 위원회를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발의할 때 보상과 배상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위원회 구성을, 명칭을 정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법체계상 우리가 산불재난과 관련해서 보상이나 배상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보상의 개념이 성립되나 그 외의 경우는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체계의 해석에 따라서 이 부분은 빼고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설치와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박정현 위원 위원회 관련한 걸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이게 남은 게 위원회만 남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배상, 손실보상금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실제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구성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렸고.

이거 각 조문에 대한 것보다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기능과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정리하면서…… 지금 부처에서도 어느 선에서 수용할 것인지 아직 입장이 전혀 없으셔서……

○박정현 위원 저는 임미애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른 위원님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이 한번 더 다듬어서…… 우리 의견 낼 게 있나요? 다 썼는데.

○소위원장 임미애 그럴까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조정하셔서, 어차피 오늘 다 결정할 거 아니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위원장님, 정부의견 대표해서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임미애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정부하고 자체 간에 논의 중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까 이 위원회에서 다룰,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해서 각 부처가 또 있습니다. 해당 소관 부처가 있고 또 저희가 지자체하고 다시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조금 더 협의 조정할 시간을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쟁점사항은 위원회와 관련된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와 또 경상북도와 울산, 경남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더 논의를 해서 다음번 회의에서 이 부분 마무리 짓고 가급적이면 저희 소위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청장 김인호 제가 추가로,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서 산림경영특구와 관련해서 국유림에 수실류 재배 가능하냐는 질문 주셨을 때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

유림을 산림청에서 직접 경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실류라고 하는, 재배가 가능한데…… 개인이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시에는 재배가 안 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산불특별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부안, 그러니까 제48조 5항을 신설하는 측면은 이달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 대해서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중에 수실류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래는 안 돼 있지만 특별법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받으셨지요?

○전문위원 황충연 예, 정리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형동 박정현 서천호 이달희 임미애 허성무

○첨가 위원(1인)

이원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임호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김우중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홍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임시회의록